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입안계획서

1. **행정규칙명**: 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고시 제2020-12호, '20. 4. 1.)

2. 개정 사유

- □ 오류점수 부과면제 대상 확대,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추가 등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 정비
- □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,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 등 개선 건의사항 반영 및 제도 유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- □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(제4조)
- 신고서의 정정·취하 신청 시 신고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, 법적 제출 근거가 없는 **사유서 필수제출 규정 삭제**
- □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혜택 확대(제4조 등)
- 품목분류사전심사(질의)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* 오류점수 전면 면제(제4조제2항제5호)
 - \star (현행) 심사(질의)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\rightarrow (개정)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
-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의 자발적 정정 유도 및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*(제4조제2항제10호)
 - * (현행) FTA C/O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
- → (개정) 정정 일자와 관계 없이 FTA C/O 발급여부 정정건 모두 오류점수 면제

- ACVA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(별표4. 수입신고 정정사유)
-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**원산지 자율점검* 결과**에 따라 **정정**하는 경우 **오류점수 미부과**(별표4. 수입신고 정정사유)
 - *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(5~30일)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(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)

□ 오류점수 부과 기준 완화(제8조)

- 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**행 추가 또는 삭제** 시 부과되는 **오류** 점수를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**하향 적용**
- * (현행) 부과규정 없이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란 추가·삭제와 동일점수 부과
- 1회 정정만으로 신고 제재 대상이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제재의 최저수준(500점)으로 설정·추가
- ※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%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5% 상향 적용

□ 오류점수 확정 과정의 절차 정비(제8조)

- 부과 보류된 오류점수를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
 확정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
- 오류현황 통보서 발송일(10일)과 20일 사이 확정 요청시 이미 전 분기 오류점수 확정·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산 및 재통보 어려움

□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(제11조)

- 신고인 편의를 위해 교육개설의 주체인 **한국관세사회**가 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**일괄제출**하도록 절차 변경
- * (현행)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이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 세관에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제재 50% 경감

□ 적용이 중복되는 내용 삭제 등 규정 정비(별표4)

- 별표4 오류점수 부과면제 사유가 고시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신고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**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** 사유와 중복시 기타사유코드(수입 98, 수출89)를 신설하여 대체
- '적하목록'을 '적재화물목록'으로 수정하여 관세법령상 법률 용어 반영(별표4. 수입신고 정정 사유)
- 4. **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**: "붙임" 참조
- 5. 규제대상여부: "해당없음"
- 6. 시행일자: 2023. . .

7. 의견제출 방법

- 제 출 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- 담 당 자 : 최진욱 사 무 관(042-481-7851)
 - 정은영 관세행정관(042-481-7847)
- 제출기한 : 2022. 12. 23.
- 제출방법 : 이메일(eunyoungch@korea.kr), 팩스(042-481-7819)